



(2) 디지털전환활동

디지털전환 기준

- 조세특례법에 따른 '신성장·원천 기술' 중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산업(제조업 또는 서비스업)
 - 기업활력법 시행령 별표1 디지털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을 활용한 산업(제조업 또는 서비스업)
- ※ 디지털전환 기술 해당여부는 미래사업재편판정위원회에서 판정

참고 ① 디지털전환 판단(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)

제3조의3(디지털전환의 범위)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과 「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·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<개정 2024. 7. 9>

1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7제2호에 따른 지능정보에 해당하는 기술
2. 별표1에 따른 디지털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

참고 ② '디지털전환'의 상세 범위

1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7제2호에 따른 지능정보에 해당하는 기술

구 분	분 야		
1. 지능정보(25)	가. 인공지능(5)	나. 사물인터넷(3)	다. 클라우드(3)
	라. 빅데이터(3)	마. 착용형스마트기기(5)	바. IT 융합(3)
	사. 블록체인(1)	아. 양자컴퓨터(1)	자. 스마트물류(1)

* () 해당기술의 개수

2. 별표1에 따른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

디지털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	
• 3D 프린팅(1)	• 디지털 트윈(1)
• 증강현실, 가상현실, 혼합현실(3)	• 설계·공정 자동화(2)
• 5G/6G 네트워크(1)	• 엣지컴퓨팅(1)